

소방시설공사업

■ 업무내용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일반 소방 시설공사업	기계분야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전기분야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 등록기준

2025.01.21 개정 기준

1. 자본금

법인	개인
1억원 이상	1억원 이상

2. 기술능력

기술자격		
전문소방 시설공사업	3인 소방기술사 or 기계·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각1인(쌍취득자가능) 보조기술인력2인	
일반소방 시설공사업	기계분야	기술자 2인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보조인력 1인 이상)
	전기분야	기술자 2인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보조인력 1인 이상)
보조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 등 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한다.

3. 공제조합

업종	자본금	기본 출자 좌수
소방시설공사업	1억원	40좌 (20,000,000 원 이상)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동일		

4. 시설 · 장비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한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

신규등록 소요기간

평균 30~45일 이내 소요